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6
----------	-----

제출년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신설된 스크린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안 제11조1항 별표1) : 스크린골프장 요금 규정 추가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1. 25. ~ 2025.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655호, 올림픽체육과-10974(2025. 11. 24.)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8119(2025. 11. 17.)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8119(2025. 11. 17.)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42349(2025. 11. 19.)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0362(2025. 12. 24.)호]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중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락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p> <p>○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체육시설</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10%;">사용료</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d rowspan="1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td> </tr> <tr> <td>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r> <tr> <td rowspan="2">체육관</td> <td>국민체육센터</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td> </tr> <tr> <td>기타 실내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td> </tr> <tr> <td>테니스장(1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5,000</td> </tr> <tr> <td>공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 외)</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td> </tr> <tr> <td>족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야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풋살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골프연습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전천후)</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실외)</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r> <tr> <td>파크골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실외 농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r> </tbody> </table>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p> <p>○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체육시설</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10%;">사용료</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d rowspan="1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td> </tr> <tr> <td>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80,000</td> </tr> <tr> <td rowspan="2">체육관</td> <td>국민체육센터</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0</td> </tr> <tr> <td>기타 실내체육관</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td> </tr> <tr> <td>테니스장(1면)</td> <td style="text-align: right;">2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5,000</td> </tr> <tr> <td>공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td> </tr> <tr> <td>축구장(천연잔디 외)</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td> </tr> <tr> <td>족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야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풋살구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r> <td>골프연습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전천후)</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게이트볼장(실외)</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r> <tr> <td>파크골프장</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실외 농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이용구분</th> <th style="width: 10%;">이용료</th> <th style="width: 6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스크린골프장</td> <td>1인/9홀/1회</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td> <td rowspan="2">·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td> </tr> <tr> <td>1인/18홀/1회</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td> </tr> <tr> <td>GDR연습장</td> <td>1회/1시간</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td> </tr> </tbody> </table>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																																																																																																																							
스크린골프장	1인/9홀/1회	12,000	· 략카 1개월 이용료: 10,000원 ·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1인/18홀/1회	20,000																																																																																																																								
GDR연습장	1회/1시간	15,000																																																																																																																								

○ 실내체육시설의 일부이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 2시간 기준임 ·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권	10,000	
1개월권	90,000	
3개월권	240,000	
6개월권	420,000	
12개월권	720,000	

○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일	4시간	조기/야간 4시간	
체육경기	180,000	72,000	108,000	· 1일 : 09:00부터 18:00까지 ·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배드민턴, 탁구장 등 기타종목 사용을 위한 일일입장 시 1인당 요금 이용시간 등은 일반체육시설 이용료 및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체육활동	420,000	168,000	252,000	
일반행사	600,000	240,000	360,000	

※ 체육활동이란 동아리, 모임 등의 비공인 체육활동을 뜻하며 운동회, 체육대회 등은 일반행사로 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일부이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 2시간 기준임 ·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권	10,000	
1개월권	90,000	
3개월권	240,000	
6개월권	420,000	
12개월권	720,000	

○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일	4시간	조기/야간 4시간	
체육경기	180,000	72,000	108,000	· 1일 : 09:00부터 18:00까지 ·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배드민턴, 탁구장 등 기타종목 사용을 위한 일일입장 시 1인당 요금 이용시간 등은 일반체육시설 이용료 및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체육활동	420,000	168,000	252,000	
일반행사	600,000	240,000	360,000	

※ 체육활동이란 동아리, 모임 등의 비공인 체육활동을 뜻하며 운동회, 체육대회 등은 일반행사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연락처	(033) 330 - 2018